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6. 3 선고 2019가단75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휘원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5. 6.

판결 선고 2020. 6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3. 12. 20. 접수 제22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2]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홍승모

별지